



어린이가 있는 곳은  
어디든 안전한 나라,  
행정안전부와 대한적십자사가  
함께 만들어갑니다.



### 지사 별 연락처

지사명	전화번호	주소
서울지사	02-2181-3104,5,3110	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45
부산지사	051-801-4034,5,6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144
대구지사	053-550-7123,4	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7
인천지사	032-810-1344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220
울산지사	052-210-9533	울산광역시 중구 성안8길 71
대전세종지사	042-220-0131,3	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9
경기지사	031-230-1633,4,6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
강원지사	033-255-9597,8	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7
충북지사	043-230-8663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
충남지사	041-640-4831,3	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118
전북지사	063-280-5842,3	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63
광주전남지사	062-570-7741,4	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117
경북지사	054-830-0725	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89
경남지사	055-278-2721,4	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26
제주지사	064-758-3504,6	제주도 제주시 전농로 7



### 안전교육의 필요성

사고 발생 시, 적절한 응급처치 수행 여부에 따라 심각한 손상을 예방하고, 신속한 치유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.

특히, 어린이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응급처치를 받게 되면 평생 어려움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으므로, **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**는 응급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**응급처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**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반드시 **실습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**을 익혀야 한다.



###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

「어린이안전법」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‘어린이안전 교육’을 의무화 함

####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16조(어린이안전교육)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\*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\* 1.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
- 2.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교육, 보육, 상담,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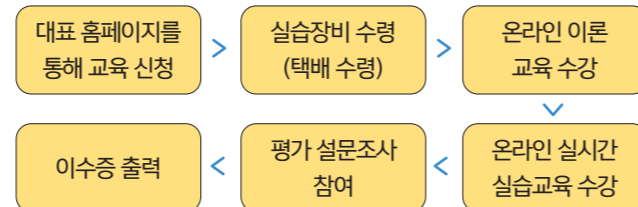
### 대한적십자사 교육내용 및 절차

#### • 교육비

어린이집,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의 1명은 비용부담 없음  
- 시설별 1인을 제외한 다른인원은 교육비 인당 25,000원

방식	시간	교육과목
온라인 이론교육(LMS)	2H	심폐소생술 및 AED이론
		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
실시간 온라인 실습	2H	상황별 심폐소생술 및 AED실습
		상황별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실습

#### • 교육 진행 절차



### 법 적용 대상 어린이 이용시설

\*「어린이안전법」적용 시설 유형: 총 22개

#### 어린이 상주시설(어린이가 오래 머무는 시설)

- 1 어린이집
- 2 유치원
- 3 초등학교
- 4 특수학교
- 5 학원
- 6 외국교육기관(유치원·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)
- 7 장애인 거주시설
- 8 국제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- 9 외국인학교(유치원·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- 10 대안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)

#### 어린이 왕래시설(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)

- 1 아동복지시설
- 2 공공도서관(건물면적 264제곱미터 이상, 병원·병영·교도소 도서관 제외)
- 3 사회복지관
- 4 유아교육진흥원 등
-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

#### 기타 시설

- 1 대규모점포(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)
- 2 유원시설(대지면적 / 실내의 경우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)
- 3 전문체육시설(관람석 수 5천석 이상, 프로스포츠 개최시설)
- 4 공연장(객석 수 1천석 이상)
- 5 박물관(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)
- 6 미술관(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)
- 7 과학관(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)



###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

# 안전 교육 안내





### 01. 응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



1 현장 안전 여부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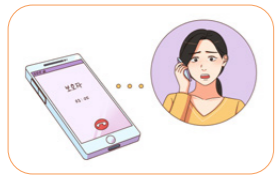
2 (외상)환자 움직임 최소화



3 신속한 119 신고



4 응급처치 시행



5 환자 보호자 연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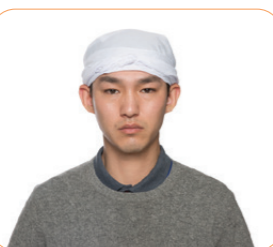
6 환자 방치 금지

### 02. 미끄러짐·넘어짐·부딪혀서 다쳤을 때

머리를 부딪친 경우

<삼각건(손수건)을 이용한 응급처치>

- 1 상처 부위 지지
- 2 삼각건의 중심부분이 이마 중앙 눈썹위에 위치
-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교차
- 4 교차시킨 삼각건의 양 끝을 이마 중앙에서 묶기
- 5 상처 부위를 피해서 매듭 정리
- 6 의식저하 또는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, 119 신고



### 03.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

소아(8세이하)·성인 심폐소생술

- 1 의식확인 및 도움 요청
- 2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
- 3 호흡확인(10초 이내)
- 4 가슴압박(30회) 시행
- 5 기도개방(머리를 젖히고 턱 들어올리기)
- 6 인공호흡(2회) \* 생략 가능
- 7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반복



### 04. 이물질을 삼켜 기도폐쇄가 일어난 경우

소아(8세이하)·성인 기도폐쇄 처치

- 1 이물질 유무 확인
- 2 환자에게 다가가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
- 3 환자의 등 뒤에 서서 한 손의 엄지 쪽이 환자의 배꼽과 명치 사이에 당도록 주먹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감싸진 채 후상방(뒤쪽, 위쪽)으로 세게 밀어올리기
- 4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시행



### 05. 놀림·끼임사고 등으로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

- 1 신속한 119 신고
- 2 멸균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압박 후 심장보다 높게 들어주기
- 3 절단된 손가락을 멸균거즈나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싼 뒤 얼음물이 채워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
- 4 전문병원 이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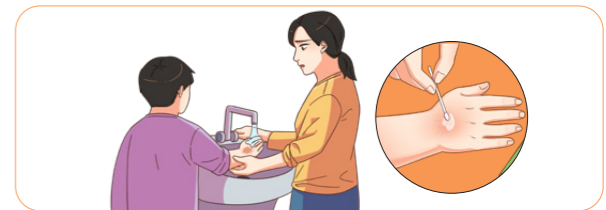
### 06. 추락사고로 다쳤을 때

- 1 신속한119신고
- 2 현장 주변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움직임금지
- 3 응급처치 시행
- 3 의식 및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 실시



### 07. 열, 전기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때

- 1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이상 세척(식히기)
- 2 항생제 연고 혹은 화상용 연고 바르기
- 3 상처부위를 멸균거즈로 덮기
- 4 2도 이상 화상시 병원 이송



### 08. 약물·세제 등을 먹었을 때

- 1 신속한119 신고
- 2 구토가능한 경우: 립스틱, 삼푸 등 무독성으로 판정된 경우
- 3 구토를 하면 위험한 경우:
  - 강산 또는 강알칼리, 석유제제
  - 의식이 없을 때



### 09. 경련 및 발작이 발생한 경우

- 1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제거하고 허리띠나 단추를 느슨하게 풀기
- 2 억지로 입을 막거나 팔다리를 잡지 않고, 고개와 몸통을 옆으로 돌리기
- 3 신속하게 119신고

